

제 2026-0012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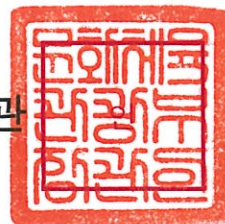
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

- 법인 명칭: 사단법인 세계무용연맹한국본부
- 소재지: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199, 1813호
- 대표자
 - 성명: 김금수
 - 생년월일: 1958. 12. 20.
 - 주소: 서울시 관악구 조원로 16길 7, 신도브레뉴아파트 103동 901호
- 사업 내용
 - 국제무용콩쿠르 개최
 - 기획 공연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사업
 - 무용예술교육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
 -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
- 허가 조건: 뒷면에 기재

「민법」 제32조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.

2026년 5월 29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

준수사항

1. 「민법」 및 「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2.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·인가·등록·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3. 주무관청이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법인의 관계서류, 회계장부 및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 법인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.
4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「민법」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- 가.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
 - 나.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- 다.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- 라.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5. 법인이 해산(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)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.
6.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.

< 변경사항 >

[illegible]